

#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목적 및 근거)** ①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학칙 제18장에 의거 설치된 수원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 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내 158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대학총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제2조(직제편성)** 학군단은 수원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직속 기구로 하고, 학군단 운영위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장병)과 학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예비역 교관, 행정실장, 획득관 등)으로 편성하여 제4조 각호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장(이하 ‘학군단장’이라 한다)이 총장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한다.

##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과 교관 인사관리

**제3조(임무)** ① 학군단은 평시에는 선발된 학군사관 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과 학군사관, 군장학생, 여군사관에 대한 우수인력 획득 및 선발,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군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일반 대학생의 군사교육을 지원한다.

② 학군단은 선발된 학군사관 후보생에 대하여 군인 기본자질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하며 강인한 체력을 단련시켜 미래의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관리
2.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
3. 군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관련 업무
6. 학군단 위상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

**제4조(편성)** ① 학군단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군사교육요원(이하 “현역 교관”이라 한다), 운전병, 조교(현역병 2명), 획득관(계약직원),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편성한다.

② 학군단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군단장이 지휘하고, 학군단장은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 및 훈육과 군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③ 직책별 주요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1. 학군단장

- 가. 학군단 업무 총괄, 지휘, 감독
- 나. 학군단장 전담과목 교관
- 다.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관리업무
- 라.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 마. 기타 대학 소속 재학생 대상 병무상담 및 지도

## 2. 현역교관

- 가. 제반 행정 업무(교육 및 훈육분야, 대학관련 사무행정 등)
- 나. 정보·작전, 인사·군수 행정 업무 수행
- 다. 담당과목 교관 및 후보생 훈육 담당
- 라. 기타 부여된 업무
- 마. 획득 및 모집분야 업무
- 바. 학군단 시설, 비품 및 후보생 보급품 관리
- 사. 예산 업무(군 및 대학 관련예산)
- 아. 학군단에 편제된 병사 관리
- 자. 기타 부여된 업무

## 3. 획득관

- 가. 획득 및 모집분야 업무
- 나. 후보생 기숙사 입/퇴사 관련 업무
- 다. 기타 대학 각 부서와 연관 업무

## 4. 조교

- 가. 군사교육에 대해 교관을 보좌하여 조교 임무 수행
- 나. 학군단 운영 관련 자체 임무분담제에 의한 책임 임무 수행

## 5. 운전병

- 가. 학군단에 편제된 군용 차량 운행 및 관리
- 나. 학군단 운영 관련 자체 임무분담제에 의한 책임 임무 수행

**제5조(군사교육요원 인사관리)** ① 국방부에서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대학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체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진급,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대학총장 책임 및 운영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한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③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과 행정실장 채용시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용하며,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육군참모총장과 대학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3장 학군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6조(군사교육 담당)** 학생군사교육은 대학총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교육 요원(학군단장, 현역교관)이 담당한다.

**제7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교 내에서 대학총장 책임 하에 실시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표준일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별 표준일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6시간을 2일로 나누어 교육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 내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④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교양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군 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⑤ 학군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하거나 군사학 교육과정 이수 중 휴학으로 인하여 군사학교육을 이수 하지 못한 경우 졸업 후에도 재학 중인 학군 사관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입영훈련)** ① 학군사관 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아야 한다. 입영훈련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에 군부대(육군학생군사학교)에 위탁하여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기 위한 군사지식과 전투기술을 연마한다.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대학교는 학군사관 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연간 교육 및 훈육 계획)** ① 학군사관후보생에 적용되는 교내교육 및 훈육 계획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지침을 기초로 매년 2월중에 작성한다.

② 학군단 연간 행사 계획은 대학 학사일정과 육군학생군사학교의 교육계획을 기초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하여 체육대회 및 체력검정, 봉사활동, 무제, 전적지 답사, 해외탐방, 단결활동, 입단·승급·임관전 축하행사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10조(인성교육 지원)** ①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인성교육을 위해 대학내 관련 기관(학생생활연구소) 및 전문 인력(교수, 강사 등)을 지원한다.

② 매 학기 시작 전(2월, 8월) 학생생활연구소와 학군단간 일정 협의를 통해 후보생 인성교육 일정을 확정 / 시행한다.

### 제4장 우수인력 및 시설 지원

**제11조(홍보업무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과 군 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①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대한 관련자료 지원

②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③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제12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과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장학금지원)** 대학교는 매 학기 학군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별도 규정한 규모의 장학금(학비감면)을 지원한다.(“ROTC위원 장학금”)

**제14조(기숙사 지원)** ①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학군사관후보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도록 우선권을 보장한다.

② 기숙사 인원 배정시 3•4학년이 구분되도록 별도의 동으로 편성하고, 호실 편성시 가급적 일반 학생과 구분되도록 한다.

### **제15조(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1. 대학은 국방부 장관이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전용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교보재 창고

②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병 생활관

③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④ 학군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

⑤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운동장 및 샤워실

⑥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2. 대학은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한다.

① 학군사관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

② 학군사관 후보생 임영훈련 및 임관행사준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③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관련 예산

## **제5장 학군사관후보생의 대학 행사 참여**

**제16조(대학행사 지원)**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대학교 요청 및 학군단장 승인에 의해 입학식, 졸업식 등 대학 공식 행사에 기수단 및 예도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학군사관후보생의 행사 지원에 따른 활동비는 대학 규정에 의해 지급이 가능하며, 학군단은 활동비 수령시 상급부대(육군학생군사학교) 보고 후 후보생 자치활동비용으로 활용한다.

## **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학군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교수 이상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총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부총장이 되고, 학군단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17조(심의시기 / 사항)**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업무 성격 또는 이 규정에서 학군단장에게 위임 또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학군단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것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1.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심의
2.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 임용과 해임 관련 심의
3. 학군단 운영과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개정
4. 그 밖에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8조(회의)** ①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학군단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장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9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게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보 상)**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과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21조(학생군사 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3 제①항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 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대학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대학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 3,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①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자는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다.

**제23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대학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